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78
----------	-------

발의연월일 : 2026. 6. 24.

발 의 자 : 조인철 · 정일영 · 정준호
주철현 · 이정문 · 허 영
김동아 · 이해민 · 서천호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법률 제 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의2.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5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③ 제27조제1항제7호·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u>2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 ⑤ (생 략)</p>	<p>제86조(과태료) ① ----- ----- --500만원------- -----.</p> <p>1. ~ 6의2. (현행과 같음)</p> <p>② ----- -----200만원-----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100만원-----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